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나2045835(본소), 2017나2045842(반소) 판결 [판매대금
청구의 소 ·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나2045835(본소), 2017나204584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525454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민인기, 신혜원, 이명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이재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욱, 이재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민

피고보조참가인C 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변론 종결2018. 2. 6.

판결 선고2018. 3. 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525454(본소), 555899(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8.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방송용 프로그램 기획, 제작 및 국내외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소재 회사이다.
- 2) 피고는 영화 홍보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소재 회사이다.
-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영화 대행·배급 및 상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소재 법인이다.

나. 원작 드라마의 제작 및 방영

- 1) 원고는 D 작가의 극본과 E 감독의 연출로 21부작 드라마 "F"(이하 '원작 드라마'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다.
- 2) 원작 드라마는 2013. 12. 18.부터 2014. 2. 27.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G에 방영되면서 최고 시청률 28.1%에 이르는 인기를 얻었고, 그 무렵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H에도 업로드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다. 원고의 재편집 영화 기획 등(이 사건 영화 판권 매매계약 체결 전의 상황)

- 1) 위와 같이 원작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자, 원고는 2014. 2.말경 원작 드라마를 2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재편집한 영화(이하 위와 같은 재편집 영화를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중국 등지에 판매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 2) 이 사건 영화의 제작·편집 작업은 2014. 2.말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원작 드라마의 감독인

E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이후부터는 E가 2014. 3.경 영입한 S 프로듀서에 의하여 수행되었다(E는 2014. 4. 10.경부터는 개인 일정으로 위 작업에 관여할 수 없었다).

3)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14. 4. 중순경 이 사건 영화의 편집본이 일응 완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원작 드라마의 작가인 D에 의한 검토가 진행되었다(이후 D는 2014. 4. 29. 개최된 편집회의에서 다수의 추가 또는 삭제될 장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위 편집본이 그대로 영화화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고, 2014. 5. 2. 원고에게 자신이 작성한 '구성안'을 보내주었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영화를 편집·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 소재 다수의 영화 배급사들은 이 사건 영화 판권을 구매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영화를 중국 소재 회사에 판매할 경우 그 판매대금 지급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여 직접 중국 소재 영화 배급사와 거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국내 소재 회사인 피고가 2014. 3. 26.경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영화를 구입하여 중국 소재 회사에 이를 재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해 왔고, 이에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영화의 판권 매매에 관한 교섭·협상에 응함으로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판권 매매계약이 진행·체결되게 되었다.

라.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영화 판권 매매계약 체결 등

1) 중국 소재 법인인 'I 유한공사'(I, 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J은 원작 드라마가 대한민국에서 성황리에 방영을 마친 직후인 2014. 3.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K(피고의 대표이사는 K의 처이고, K는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이하 'K의 행위'를 특별히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의 행위'도 '피고의 행위'로 실시한다)를 만나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구입하여 중국 내에서 극장 개봉을 하고자 하는데, 경쟁사가 너무 많아 구매가 쉽지 않으니, 원고와 소통이 될 수 있는 피고가 이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작 드라마 제작사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구입하여 이를 I에 재판매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 대신 자금력이 있는 보조참가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4. 4. 25.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의 판권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저작권·이용권 등 일체의 권리를 미화 5,825,000달러(세금 포함)에

판매하는 내용의 '컨텐츠 판권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텐츠 판권 판매 계약서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회사 보조참가인, 그리고 보조참가인의 보증과 함께 본 계약의 판권 판매 금액을 지급할 P회사와 G드라마 "F"를 영화용으로 제작한 작품(이하 '본 영화'라고 하다)의 모든 지적재산권과 독점적 판권 판매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재 회사 피고는 '본 영화' 판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소유한 '본 영화'의 판매권리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저작권·이용권 등 일체의 권리(이하 '본 권리'라 한다)를 보조참가인이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합의한 권리에 관한 상세한 조건을 본 계약에서 규정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대상인 '본 영화'의 상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영화명 : F
- ② 제작회사 : 원고
- ③ 판권 소유회사 : 피고
- ④ 극본: D
- ⑤ 감독: E
- ⑥ 출연배우 : L, M, N, O 등

제6조(대금의 지급)

1. 보조참가인의 보증회사로서 본 계약의 판권 판매 금액 지급회사인 P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본 권리 인수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① 기본대금 : 미화 5,825,000달러(세금 포함 금액임)

② Revenue Share Rate

a. 본 계약 제5조 제2항 '극장 수입'의 6%(세금 별도)

b. 본 계약 제5조 제3항 '부가판권 수익'의 6%(세금 별도)

③ 기본대금 지급시기 : 본조 제1항 제1호상의 기본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a. 계약금 : 본 계약일 즉시 총 금액의 50%(2,912,500달러, 세금 포함) 지급

b. 잔금 : '본 영화' 최종 버전 Master Tape 등(본 계약 제7조 '전소재')의 수령 후 즉시 총 금액의 50%(2,912,500달러, 세금 포함) 지급

2. 피고는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4주일 이내에 '본 영화' 최종 버전 Master Tape 등(본 계약 제7조 '전소재')을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본 영화' 제작 및 소재 인도)

1. 피고는 '본 영화'를 피고의 비용으로 원작 드라마 연출자인 E 감독의 편집연출로 제작하여 쌍방이 최종 합의한 Master Tape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이하 Master Tape를 포함해 '전소재'라고 한다)을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다.

① '본 영화' Master Tape (DCP파일, MOV파일)

② DA88 또는 WAV파일에 의한 멀티음성. 단, 이하를 각각 독립된 트랙에 수록

a. 한국어 대사, 한국어 나레이션

b. 음악, SE의 MIX(5.1ch 이상)

c. 한국어 대사만 [모노럴(monaural)]

d. 음악만(5.1ch 이상)

e. SE만(5.1ch 이상)

③ '본 영화' 시나리오 3세트

④ 광고/홍보용 스틸 사진 30장 이상

⑤ 메인 스텝 및 출연진 등의 프로필과 사진

2. 피고는 '본 영화' 제작시 보조참가인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계약지역의 법률 규정 등에 의거한 영화심의 등으로 발생하는 수정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보조참가인은 2014.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라 기본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미화

2,912,500달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영화 판권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4. 20. 피고와 이 사건 영화의 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에 임하게 되었고, 2~3회의 계약서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선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4. 4. 30. 피고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의 판권 등을 4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러한 계약 내용을 문서화한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화 판권 등을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는 내용'의 '컨텐츠 판권 판매계약서'(이 부분만을 특정할 경우에는 '제1계약' 또는 '제1계약서'라고 한다)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 제작 비용 등으로 2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반 비용의 지급계약서'(이 부분만을 특정할 경우에는 '제2계약' 또는 '제2계약서'라고 한다. 한편, 제1, 2계약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로 나누어 작성되었고, 위 각 계약서 작성일자는 이 사건 선행계약 체결일과 같은 2014. 4. 25.로 기재하기로 하였다(위와 같이 계약서가 나누어 작성된 것은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영화 판권을 판매함에 따라 작가나 출연배우 등에게 분배할 판권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일자를 소급한 것은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텐츠 판권 판매 계약서(제1 계약서)

피고와 G 드라마 "F"를 영화용으로 제작한 작품(이하 '본 영화'라고 한다)의 모든 지적재산권과 독점적 판권 판매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본 영화' 제작사인 원고는 '본 영화' 판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원고가 소유한 '본 영화'의 권리(이하 '본 권리'라고 한다)에 대한 처분권 및 관리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에 관한 상세한 조건을 본

계약에서 규정하기로 한다.

제2조(보증의무)

1. 원고는 본 계약에서 '본 영화'의 판매권리 및 관련 저작권, 이용권 등을 포함한 '본 권리'의 적법하고 정당한 단독 소유권을 가지며 피고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법하게 본 권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피고에게 본 계약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보증할 의무가 있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가 본 계약에 근거하여 '본 영화'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이의 또는 제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두를 해결하여 피고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대상인 '본 영화'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영화명 : F(G를 통해 방영된 한국드라마의 재편집본)

제6조(대금지급과 이행조건)

1. 피고는 본 계약서상의 '본 권리' 인수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 기본대금:

판권료 : 일금 이십억 원정(₩2,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② Revenue Share Rate

- a. 본 계약 제5조 제2항 '극장 수입'의 5%

(중국 내 관전총국 통계를 근거로 한 관객수와 티켓가격, 매출액을 기초로 정산한다)

- b. 본 계약 제5조 제3항 '부가판권 수익'의 5%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하는 매출액을 기초로 정산한다)

- ③ 기본대금 지급시기: 본조 제1항 제1호상의 기본대금의 총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 a. 계약금 : 본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총 금액의 50%(₩1,000,000,000/부가세 별도) 지급

b. 잔금 : '본 영화' 최종 버전 Master Tape 등(본 계약 제7조 '전소재')의 수령 후 10일 이내 총 금액의 50%(₩1,000,000,000/부가세 별도) 지급

④ Revenue Share Rate 지급시기 : 영화개봉일 이후 120일 이내 1차 정산을 완료하며, 이후는 매 30일 단위로 정산한다.

3. 원고는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5주일 이내에 '본 영화' 최종버전 Master Tape 등(본 계약 제7조 '전소재')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본 영화' 제작 및 소재 인도)

1. 원고는 본 영화를 원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쌍방이 최종 합의한 Master Tape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이하 Master Tape를 포함해 '전소재'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① 본 영화 Master Tape (DCP파일, MOV파일)

② DA88 또는 WAV파일에 의한 멀티음성. 단, 이하를 각각 독립된 트랙에 수록

a. 한국어 대사, 한국어 나레이션

b. 음악, SE의 mix(5.1ch 이상)

c. 한국어 대사만 [모노럴(monaural)]

d. 음악만(5.1ch 이상)

e. SE만(5.1ch 이상)

③ '본 영화' 시나리오 3세트

④ 광고/홍보용 스틸 사진 30장 이상

⑤ 메인 스텝 및 출연진 등의 프로필과 사진

2. 원고는 '본 영화' 제작시 계약지역의 법률 규정 등에 의거한 영화심의 등으로 발생하는 수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처리)

1. 원고는 자신의 책임하에 참가시키거나 선임한 제작스텝(프로듀서, 극작가, 촬영, 편집스텝들을 포함한 일체의 관련 인원)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가 피고가 행사하는 본 계약의 '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하며 이와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보장한다.

2. 원고는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피고가 계약지역에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한국판, 계약지역판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시나리오나 일체의 콘텐츠 요소(음악 저작물을 포함)와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 인접권자, 출연자 등(이하 총칭하여 '기여자'라고 한다)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이와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보장한다.

3. 원고는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피고가 계약지역에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본 영화'에 포함되는 모든 배경음악(이하 '본 음악원반'이라고 한다)과 관계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소유하거나 사용 승인 등을 얻어야 하며 피고가 계약지역에 있어서 '본 영화'의 복제, 반포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와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보장한다.

제10조(손해배상)

3. 본 계약 제6조에 의하여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즉시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수령한 계약금의 30%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제반 비용의 지급계약서(제2계약서))

피고와 G 드라마 "F"를 영화용으로 제작한 작품(이하 '본 영화'라고 한다)의 모든 지적재산권과 독점적 판권 판매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본 영화 제작사인 원고는 본 영화의 제작을 위한 모든 제반 비용에 대한 지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한다.

제1호(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원고가 소유한 '본 영화'의 제작 등(이하 '본 권리'라고 한다)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한 지급 내용을 규정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대상인 '본 영화'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화명 : F(G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재편집본)

제3조(대금지급과 이행조건)

피고는 본 계약서상의 부수한 일체의 비용에 대한 대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기본대금:

제반비용 : 일금 이십팔억 원정(₩2,8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제반비용은 제작비, 인건비, 진행비,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기본대금 지급시기 : 본조 제1항 제1호상의 기본대금의 총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a. 계약금 : 본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총 금액의 50%(₩1,400,000,000/부가세 별도) 지급

b. 잔금 : '본 영화' 최종 버전 Master Tape 등(본 계약 제7조 '전소재')의 수령 후 10일 이내 총 금액의 50%(₩1,400,000,000/부가세 별도) 지급

제4조(계약 의무)

피고와 원고는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2014년 4월 25.일 콘텐츠 판권 판매계약(이하 '판권 계약'이라고 한다)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며 이러한 이행의무는 본 계약의 기본의무임을 확인한다.

제6조(손해배상)

3. 본 계약 제3조에 의하여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즉시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수령한 계약금의 30%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5. '판권 계약'에서 규정한 원고의 제반의무가 불이행되어 '판권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도 자동 파기되며 원고는 즉시 수령한 모든 대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수령한 대금의 30%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계약서는 위 2개 계약서 외에 2014. 4. 22.경 보내온 계약서 초안을 기초로 원고의 2~3회에 걸친 수정(삭제 또는 추가)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피고가 제시한 위 초안은 이 사건 선행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정한 주요 부분은 계약서 제3조(계약의 목적물), 제7조(본 영화 제작 및 소재 인도)이었고(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선행계약서의 기재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비교·요약하면

별지 '비교표' 기재와 같다.

5) 피고는 2014. 5.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본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26억 4,000만원(부가세 포함)^{1) 2)} 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경과(마스터 테이프 인도시까지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2.경부터 D으로부터 제공받은 '구성안'에 따라 원작 드라마를 편집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4. 5. 16.경 이 사건 영화 1차 편집본 영상(이하 '1차 편집본'이라고 한다)을 완성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2. 무렵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측 관계자들 참여하에 이 사건 영화 시사회를 2014. 5. 27.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위 시사회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열리게 되었고, 그 일정은 당초 2014. 6. 10.경이었으나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2014. 5. 27.로 앞 당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4. 5. 22. 원고측 프로듀서 S(이하 원고측 관계자의 행위를 특별히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측 관계자의 행위'도 '원고의 행위'로 실시한다)에게 '이 사건 영화 편집본 영상이 담긴 MOV 파일³⁾과 심의용 대본 3부를 요구하면서 최종 마스터 테이프는 중국에서 심의여부가 나온 다음 요청할 것이니 그때 DCP 파일⁴⁾로 주면 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1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AVI 파일⁵⁾과 영화판 심의용 대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3) 원고는 2014. 5. 27. 원고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K를 비롯한 관계자, 보조참가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스튜디오에서 1차 편집본에 대한 시사회를 열었다.

4) 피고는 위 시사회 직후 원고에게 1차 편집본과 관련하여 컴퓨터 그래픽 등 기술적인 사항을 지적하였을 뿐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는데, 2014. 6. 1. 원고에게 향후 중국에서 진행될 영화 심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화 제작에 중국 스텝을 참여시켜 공동제작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담긴 내용(위와 같은 요구사항의 경위 등)은 아래와 같은 취지이다.

- ▶ 이 사건 영화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 내 많은 회사들이 이 사건 영화 개봉과 관련하여 '한국 내 드라마를 단순 편집만 하여 제작한 영화가 중국 내에서 쉽게 개봉되면, 향후 중국 내 영화업계 사기 저하는 물론 한국만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식의 음해를 하고 있다.
- ▶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영화의 심의통과와 관련된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광전총국(중국의 영화 심의기관이다) 관계자는 '이 사건 영화가 원작 드라마의 단순 편집일 경우 심의불가 판정을 하라는 위선의 지시가 있어 1차 편집본으로는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 이에 위 광전총국 관계자는 심의통과가 가능한 방안으로 ① 10분 정도라도 추가 촬영을 하여 새로운 장면을 삽입하는 방법, ② 현재 한국에서 편집한 편집본을 토대로 중국 스텝을 참여시켜 향후 작업을 공동제작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 그러나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광전총국 관계자에게 '위 ① 방법의 경우 시간상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한국 내 기존 출연진을 통한 추가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설득 중이고, 광전총국 관계자와 '위 ② 방법만 진행하여 심의를 통과시키자'고 협의 중에 있다.
- ▶ 따라서 원고도 위 ② 방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

5)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1차 편집본에 컴퓨터 그래픽(CG), 음악, 보색 등 피고의 요구사항을 반영·보충한 영상(이하 '2차 편집본'이라고 한다. 내용상으로는 1차 편집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을 AVI 파일로 보내면서 'DCP 파일은 최종 심의 후에 작업하기로 하겠다. 2014. 6. 12.까지 요구되는 코덱(파일 형식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과 해상도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6)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게 '2014. 6. 16.까지 이 사건 영화 MOV 파일과 원본 소스의 DCDM 파일6)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MOV 파일과 DCP 파일의 형태로 작업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DCDM 파일의 경우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여 시간이 필요한데, MOV 파일과 원본 소스의 DCDM 파일 모두 필요한 것인지' 등을 질문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MOV 파일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7) 위와 같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2차 편집본의 MOV 파일을

전달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2차 편집본의 DCP 파일을 퀵서비스로 전달하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원고는 DCP 파일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6. 17. 2차 편집본 MOV 파일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차 편집본 DCP 파일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인수증을 작성해 주는 것을 거부하였고, 2014. 7. 3. 원고에게 'DCP 파일을 잘 받았으나, 금번에 보내 준 DCP 파일은 최종 합의한 완성본이 아니고, 중국 내 심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DCP 파일을 다시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원고와 피고는 '2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위 'MOV 파일' 또는 'DCP 파일'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파일들을 '마스터 테이프'라고도 지칭하기로 한다).

사. 마스터 테이프의 내용 등(원작 드라마와 비교하여)

1) 원작 드라마의 감독인 E는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의 편집이나 연출에 관여하지 않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작 드라마를 편집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는 작업에 관여하였으나, 마스터 테이프는 E가 개인 일정으로 이 사건 영화 편집·제작 작업을 그만 둔 후 D 작가의 구성안에 따라 S 프로듀서 등에 의하여 편집·제작된 것이므로, E가 마스터 테이프의 편집이나 연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원작 드라마의 주요 출연진은 배우 M, L, N, O, Y 등이다. 원작 드라마는 400년 전부터 지구에서 살고 있는 외계인 Z(배우 L)이 인기 배우 AA(배우 M)와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작 드라마에는 AA를 짝사랑하는 재벌 2세 AB(배우 N)과 AA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배우로서 AB을 짝사랑하는 AC(배우 O)가 등장하여 극적 긴장감과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AB의 친형으로서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소시오패스 AD(배우 Y)이 등장하여 Z(배우 L)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작 드라마에서는 AA(배우 M)와 Z(배우 L)의 사랑 이야기 외에도 그들과 AB(배우 N), AC(배우 O)의 관계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N과 O의 출연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마스터 테이프의 내용은 AA(배우 M)와 Z(배우 L)의 사랑 이야기가 줄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인물은 AD(배우 Y)뿐이고, 배우 N은 몇 초 동안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등장하고, 배우 O는 몇 초 동안 대사 없이 얼굴만 나올 뿐이며, AA와 Z, AB, AC 등 4인의 갈등 구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원작 드라마에는 여러 곡의 배경음악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곡은 가수 AE의 "W"이고, 위 노래는 원작 드라마 방영 무렵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마스터 테이프에는 원작 드라마의 배경음악 중 가수 AF의 "AG", L의 "AH" 등 총 3곡이 사용되었으나, AE의 "W"는 사용되지 않았다.

아.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은 2014. 5. 27. 열린 시사회 직후,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1차 편집본에 대하여 '스토리가 이어지지 아니하여 영화라고 보기 어렵다', '원작 드라마 감독이 편집한 것이 맞느냐?'는 등으로 항의하였고, 이후에도 몇차례 1차 편집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조참가인의 수정요구 사항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위 수정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피고가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의 위 수정요구 사항을 전달하였을 경우, 원고가 이를 마스터 테이프에 반영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기로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2014. 6. 18.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AI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앞서 본 바와 같은 2차 편집본 MOV 파일 등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영화 최종 완성본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물품인수인계확인서에 AI의 서명을 받았는데, 위 물품인수인계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물품 인수인계 확인서

품명: 'F' 영화판 / 규격: 1h 54m

인계회사: 피고 / 인수회사: 보조참가인 / 인수자: AI

특이사항: 'F' 영화판 최종 완성본

- 편집본 mov 원본 파일

- 5.1ch 사운드 소스

- 5.1ch 사운드 소스(멘트 분리)

4) 피고는 위 물품인수인계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선행계약이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등이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5)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4. 8. 13. 피고에게 '1차 편집본과 2차 편집본은 E 감독이 편집에 참여하지 않았고, 배우 N과 O가 맡은 캐릭터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원작 드라마와 동일한 OST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선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등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문을 받은 이후인 2014. 8. 21. 원고에게 '배우 N, O의 출연 장면을 원작 드라마의 출연비율 수준으로 편집, 원작 드라마에 사용된 OST 'W' 삽입, 중국 심의통과를 위하여 원작 드라마에 등장하지 아니한 장면으로 최소 30% 이상 추가촬영 및 구성, 원작 드라마의 감독인 E의 직접 편집 및 추가 촬영'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8. 다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는 한편, 중국 내에서 이 사건 영화 심의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E 감독, D 작가, 주제곡 작사가, 주요 연기자 등의 저작권 관련자의 허가서'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저작권자 등의 허가서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피고는 2015. 2. 6. 원고에게 재차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저작권자 등의 허가서는 필요하지 아니하나, 중국 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이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마스터 테이프 등 인도 의무가 이행되었음에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현재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중국 내 심의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를 신뢰할 수 없으니, 위 허가서 등이 중국 내 심의기관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인지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달라', '나머지 요구사항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4)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원고가 2014. 7. 3. 피고에게 교부한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는 양사가 합의한 최종 완성본이 아니고, 2015. 3. 2.까지 피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위와 같은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차. 관련 민사판결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조참가인의 2014. 8. 13.자 해제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4. 9. 3.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계약에 기한 잔대금 미화 2,912,500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424호)를 제기하여 2015. 9.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2)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2017. 4. 7. '1차 편집본이나 2차 편집본은 이 사건 선행계약에서 정한 목적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선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981호), 위 판결은 2017. 9.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2454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내지 43, 45호증, 을가 제1 내지 7, 12 내지 22호증, 을나 제1, 2, 8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S, V의 각 증언, 당심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다툼의 핵심 대상)

가. 원고 주장(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영화의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MOV 파일) 등'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잔금 24억 원과 그 부가가치세 2억 4,000만 원의 합계 26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보조참가인 주장 포함)

1)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MOV 파일)는 편집 초안에 불과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마친 최종 버전의 마스터 테이프라고 할 수 없다. 즉, 위 마스터 테이프는 ① 원작 드라마의 감독인 E 감독이 편집이나 연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② 원작 드라마의 주요 출연배우인 N, O의 출연 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③ 원작 드라마에 사용된 OST 'W'가 삽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국 내 심의기관의 의견에 따른 수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배우 N, O의 출연 장면을 원작 드라마의 출연비율 수준으로 편집, 원작 드라마에 사용된 OST 'W' 삽입, 중국 심의통과를 위하여 원작 드라마에 등장하지 아니한 장면으로 최소 30% 이상 추가촬영 및 구성, 원작 드라마의 감독인 E의 직접 편집 및 추가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 내 심의 통과를 위한 원작 드라마 작가인 D의 허가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는 제1계약서 제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중국 내 심의통과를 위한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원작 드라마의 작가인 D의 허가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제1계약서 제2조, 제8조가 정하고 있는 권리관계 보증 또는 처리 의무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 거절 의사)의 표시)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24억 원(= 제1계약 계약금 10억 원 + 제2계약 계약금 14억 원, 지급된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다)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계약금의 30%) 7억 2,000만 원의 합계 3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및 판단순서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계약서 제6조, 제7조는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를 비롯한 기타 산출물을 인도한 후 1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계약서 제3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제1계약과 제2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상 주요 내용은 제1계약서에 담겨 있으며, 제2계약은 제1계약의 운명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하부터는 제1계약서만을 인용·설시하기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전달한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MOV 파일)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위 마스터 테이프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당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2015. 2. 25.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한편, 제1계약서 제7조는 원고의 의무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외에 기타 산출물로 'DA88 또는 WAV 파일에 의한 멀티음성 등'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기타 산출물의 제공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반면, 위 마스터 테이프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로 볼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잔금 지급시기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의 규정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기타 해제사유(중국 내 심의통과를 위한 협조 의무 불이행, 권리관계 보증 내지 처리 의무 불이행)가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하고, 그 주장의 당부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각 쟁점(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제공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영화 심의통과를 위한 원고의 협조 의무 불이행

여부, ③ 원고의 권리관계 보증 내지 처리 의무 불이행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제공 의무의 이행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49 내지 54, 61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6.

17. 피고에게 전달한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MOV 파일)는 제1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영상저작물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그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고 제작단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에 반해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상저작물 시장에서는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선판매계약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업계의 배급사와 같은 '판권 매수인'의 입장에서든 어느 정도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선판매가 이루어지는 사례의 대부분은 제작자가 업계에서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성 등이 반영되어, 장래 제작될 영상저작물에 관한 판권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자가 장래 완성될 영상저작물의 흥행성이나 완성도를 보장하지 아니하고(즉, 영상저작물의 성패에 관한 위험은 '판권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 제작·편집에 관한 권한은 제작자에게 일임되는 것(즉, 제작자가 그 능력을 발휘하여 명성과 평판에 걸 맞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매수인으로서 영상저작물의 제작 과정에 간섭하지 아니한다)이 일반적이다.
- 2) 이 사건 계약도 장래 완성될 영상저작물인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선판매하는 내용이고, 원고 역시 2006. 9.경 설립된 이후 2016년경까지 매년 1~3편의 드라마를 꾸준히 제작하여 왔고 2015년도와 2016년도의 매출액이 약 3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업계에서 나름대로 명성과 평판이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판권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감안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 문언이나 그 체결 과정에 나타난 사정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도 위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판권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실제로 충분히 반영되거나 전제되었음을 뒷받침한다.

가) 제1계약서 제6조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의 수령 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영화의 흥행성이나 성패 또는 위 마스터 테이프의 수령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여타 상황 등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는 위 마스터 테이프의 예술적 가치나 완성도 등에 따라 기본대금(계약금 및 잔금)을 감액할 수 있다거나 그 지급을 저절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한 K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화 관련 판권거래에서 매수인이 추가 촬영을 요구하거나 시나리오를 수정·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모르지만 영화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계약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제작될 영상저작물의 구성이나 내용에 관하여는 제작자가 전적으로 제작·편집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매수인이 이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수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만약, 위와 달리 매수인이 일정 정도 수정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극단적으로는 매수인이 제작된 영상저작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내세워 계약상의 대금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심지어 완성된 영상저작물의 내용 등을 가지고 흥행 가능성 등을 예측·조사하여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적·규범적 평가의 영역에서는 물론 현실적·실제적 거래계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용인될 수 없음은 비교적 분명하므로, K의 위 증언이 비록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합리성과 설득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가 보내 준 계약서 초안(피고가 보내 준 계약서 초안의 내용은 이 사건 선행계약서의 그것과 당사자만 다를 뿐 기본 체계는 동일한 것이었다)을 2~3회에 걸쳐 검토·수정하였다. 즉, 원고는 제1계약서 제3조(계약의 목적물) 중 "① 영화명: F" 부분을 "① 영화명: F(G를 통해 방영된 한국드라마의 재편집본)"로 고치고 출연배우에 관한 "⑥ 출연: L, M, N, O 등"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사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제7조(본 영화 제작 및 소재 인도) 제2항의 "원고는 본 영화 제작시 피고가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부분을 삭제하였다(피고는 원고에 의해 수정된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제1계약서 제3조 중 삭제된 부분은 원고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영화의 구성이나 내용(출연배우) 등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제7조 제2항 중 삭제된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편집 과정에 관여하여 그 구성이나 내용 등과 관련된 부분까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서 초안의 일부 기재를 삭제한 이유는 '이 사건 영화의 편집·제작에 관한 권한을 원고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음'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 또한 피고에게 설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위와 같이 일부 기재가 삭제된 이유나 의도 등에 관하여 "원고가 '포괄적으로 가자'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포괄적으로 가자'는 말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 기인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오히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편집함에 있어 특정의 제약을 두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영화 편집·제작권을 원고가 전적으로 가지도록 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그 결과물이 조잡한 수준의 것이면 피고 입장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우려를 가졌을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영화 편집권을 원고가 전적으로 가지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상저작물 제작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명성과 평판이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제1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원고가 기본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영화의 극장 수입이나 부가판권 수익의 5%를 지급받는 내용'의 'Revenue Share Rate'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조항 등에 기대어 원고로서도 그 명성이나 평판에 훼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장래 이 사건 영화의 흥행 정도에 따른 수입(Revenue Share)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리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원고는 본 영화 제작시 계약지역의 법률 규정 등에 의거한 영화심의 등으로 발생하는 수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요구하는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즉, 피고도 이

사건 영화의 구성이나 내용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중국 내 심의는 원고가 제공한 마스터 테이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시간적 순서상 이 사건 영화가 완성된 다음의 절차임이 분명한 점, ② 중국 내 심의는 통상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서 잔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수령 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마스터 테이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국 내 심의과정에서 등장하는 수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으로 기능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1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중국 내 심의 과정에서 법률 규정상 일부 장면 등이 삭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이나 편집에 관한 권한 등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위 조항을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도 이 사건 영화의 구성이나 내용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서 보인 피고의 언동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2014. 6. 17.자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MOV 파일)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인함에 부족함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5. 27. 1차 편집본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가졌는데, 위 시사회 직후는 물론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MOV 파일)가 전달된 2014. 6. 17.까지 원고에게 1차 편집본과 관련하여 컴퓨터 그래픽 등 기술적인 사항을 지적하거나 2차 편집본 영상의 코덱(파일 형식) 또는 해상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 '이 사건 영화 제작 작업에 중국 스텝을 참여시켜 공동제작 형식으로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해야 할 어떠한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이 사건 영화는 원고의 이름을 걸고 제작하는 원고의 작품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는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이 원고의 작품에 편승하는 것을 묵인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4. 6. 12.

피고에게 '1차 편집본에 N, O가 등장하지 않고, 원작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과 동일한 음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가 제19호증의 1, 2)을 보냈고, 위 경고장에 '참조수신'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경고장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설령, 위 경고장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과 관계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의 항의를 받아들여야 할 근거도 없다).

나) 또한, 피고는 2014. 6. 17. 원고로부터 마스터 테이프(2차 편집본 영상이 담긴 MOV 파일)를 전달받고서 2014. 7. 3.까지도 원고에게 위 마스터 테이프의 구성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4. 6. 18. 보조참가인에게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위 마스터 테이프 등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영화 최종 완성본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물품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거기에 보조참가인 측의 서명을 받았고, 이후 보조참가인에게 위 물품인수인계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선행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등이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4. 8. 13.자 해제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4. 9. 3.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선행계약이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등이 2014. 6. 18. 보조참가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4. 6. 17.자 마스터 테이프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내지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영화의 편집이나 연출에 원작 드라마 감독인 E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E가 이 사건 영화 편집 등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그러한 맥락에서 피고가 보내 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제3조(계약의 목적물) 중 "⑤ 감독: E" 부분과 제7조(본 영화 제작 및 소재 인도) 제1항 중 "원작 드라마 연출자인 E 감독의 편집연출로 제작하여" 부분을 삭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작 드라마의 주요 출연배우인 N, O의 출연 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원작 드라마에

사용된 OST 'W'가 삽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이 사건 영화의 구성과 내용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영화의 편집·제작에 관한 권한을 원고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이를 전제로 체결되었다(물론, 원고의 위와 같은 편집·제작에 관한 권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흥행성이나 성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제공의 마스터 테이프 자체로 보아 전체적인 흐름이나 줄거리가 매우 부자연스럽거나 이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원고의 편집·제작에 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용인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제공의 마스터 테이프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중국 심의통과를 위하여 원작 드라마에 등장하지 아니한 장면으로 최소 30% 이상의 추가촬영 및 구성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음은 명백하다.

6)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한 2차 편집본(마스터 테이프)은 이 사건 선행계약에서 정한 목적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판단의 주된 이유 내지 근거는 '원작 드라마 감독인 E의 관여 없이 편집·연출된 점', '원작 드라마의 출연배우 N, O의 등장 장면이 거의 없는 점', "원작 드라마의 OST 'W'가 삽입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그리고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원고 제작의 마스터 테이프를 그대로 보조참가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한 위 2차 편집본(마스터 테이프)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2차 편집본(마스터 테이프)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계약서의 내용과 이 사건 계약서의 그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행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제공 의무'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제공 의무'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선행계약서에는 이 사건 영화가 원작 드라마 감독인 E의 편집·연출로 제작되어야 하고 원작 드라마의 조연배우인 N과 O가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고 볼 만한 조항(이 사건 선행계약서 제3조, 제7조 제1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영화 제작시 보조참가인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사건 선행계약서 제7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재 부분을 모두 삭제함에 따라 해당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서, '이 사건 계약상의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보인 언동이나 태도'는 '이 사건 선행계약상의 매수인인 보조참가인이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보인 그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도 관련 민사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피고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행계약을 미리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성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선행계약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피고 주장의 기타 해제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영화 심의통과를 위한 원고의 협조 의무 불이행 여부 가) 이 부분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배우 N, O의 출연 장면을 원작 드라마의 출연비율 수준으로 편집, 원작 드라마에 사용된 OST 'W' 삽입, 중국 심의통과를 위하여 원작 드라마에 등장하지 아니한 장면으로 최소 30% 이상 추가촬영 및 구성, 원작 드라마의 감독인 E의 직접 편집 및 추가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② '중국 내 심의 통과를 위한 원작 드라마 작가인 D의 허가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도 응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제1계약서 제7조 제2항이 정한 '중국 내 심의통과를 위한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나) 먼저, 위 ①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과 '제1계약서 제7조 제2항의 의미를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① 부분에서 열거된 요구사항 중 '원작 드라마에 등장하지 아니한 장면으로 최소 30% 이상 추가촬영 및 구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중국 내 심의통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고, '원작 드라마에 등장하지 아니한 장면으로 최소 30% 이상 추가촬영 및 구성' 부분은 중국 내 법률 규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 현재 상황의 변화에 따른 중국 광전총국 관계자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위 ②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15. 1. 28.에야 비로소 중국 내에서 이 사건 영화 심의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E 감독, D 작가, 주제작자, 주연기자 등의 저작권 관련자의 허가서'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 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이에 협조할 용의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마스터 테이프 등 인도 의무가 이행되었음에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현재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중국 내 심의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를 신뢰할 수 없으니, 위 허가서 등이 중국 내 심의기관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인지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고에게 위 허가서 등이 중국 내 심의기관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인지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일련의 경과 등에다 제1계약서 제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D 작가의 허가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제1계약서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권리관계 보증 내지 처리 의무 불이행 여부 가) 이 부분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작 드라마의 작가인 D의 허가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제1계약서 제2조, 제8조가 정하고 있는 권리관계 보증 또는 처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제1계약서 제2조 및 제8조의 문언 등에 의하면, 그 의미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화에 관여한 사람들의 저작권 관련 허가서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등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권리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한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D 작가의 허가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제1계약서 제2조, 제8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인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제공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잔금 24억 원과 그 부가가치세 2억 4,000만 원의 합계 26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스터 테이프 인도일인 2014. 6. 17.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3.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당심과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홍승구

판사조기열

별지

계약금 14억 원으로 구성된 계약금 34억 원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26억 4,00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2) 위 계약금 26억 4,000만 원은 제1계약서 계약금 10억 원과 제2계약서 계약금 14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3) MOV 파일은 일반적인 동영상 압축 코덱(Codec, 음성 또는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포맷으로서 주로 편집용 영상으로 활용된다.

4) DCP(Digital Cinema Package) 파일은 디지털 파일을 공정매체(하드디스크)나 위성, 광대역 접속망(네트워크) 등을 통해 디지털 영사기 및 홈시어터와 이동용 단말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스터링 된 상영용 영화 파일로서 편집이 불가능하다.

5) AVI(Audio Video Interleaved) 파일은 영상을 컴퓨터상에 구현하기 위한 X사의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영상 파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시사회 일정이 앞 당겨짐에 따라, 피고가 요구한 MOV 파일은 사운드 효과음 작업 등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제공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이에 S는 AVI 파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운드 효과 등은 별도 작업(S는 K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러한 작업을 '음악 가이드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므로, AVI 파일로도 시사회 진행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DCDM(Digital Cinema Distribution Master) 파일은 DCP 파일로 변환하기 직전의 마스터링을 거친 파일로서 편집이 가능한 파일이다.

7) 피고는 2016. 8. 8.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기타 산출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0. 28.자 반소에 대한 답변서에서 '기타 산출물 제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다툼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다.